

KDC 5판 기초법학 부문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ing Modifications of KDC 5th ed. in Jurisprudence Field

김 자 후(Ja-Hoo Kim)**

〈 목 차 〉

I. 서론	전개 내역 및 분석.평가
II. 기초법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문헌 분류표 적용 방안	IV. KDC 5판 360.1-.9(기초법학 및 법률 학일반)의 개선된 전개 내역
III. 현행 문헌분류표 상 기초법학 부문의	V.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KDC 5판 360.1-.9(기초법학 및 법률학일반)의 전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법률학 전문 학술서적에 나타난 기초법학(이론법학)의 세부 학문체계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KDC 5판, DDC 23판 및 NDC 9판의 기초법학 부문을 비교·분석하여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전수 조사하여 신규 주제항목(교과목 단위)을 추가하여 국내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KDC 6판에 일조하고자 한 것이다.

키워드: 문헌분류법, 기초법학, 한국십진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 일본십진분류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DC 5th ed. in Jurisprudence Field. The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to analyze academic fields in Jurisprudence, the contents of Jurisprudence introductory books are investigated. Second, to find out the problem of KDC Jurisprudence field, comparative analysis is done on the three classification schemes - KDC, DDC and NDC. Third, curriculum of domestic law schools are reflected. If above suggestions are adopted, effective literature classification scheme which is suited to domestic circumstances will be certainly prepared.

Keywords: Literature Classification Scheme, Jurisprudence, KDC, DDC, NDC

* 이 연구는 2012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hookim@gwangju.ac.kr)

• 접수일: 2012년 8월 13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2월 26일

I. 서론

먼저 이 논문의 관심대상 주제 분야인 법률학의 지식체계를 살펴보면 기초법학(이론법학)분야와 실정법분야(국제법 및 국내법)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법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법률인 대륙법계통 및 미국, 영국 등의 법률인 영미법계통으로 대별되며 각 법 계통별로 그 체계가 사뭇 다를 뿐 아니라 같은 법 계통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도 그 체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주제 분야이다.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_한국십진분류법, 이하 KDC) 5판에 있어서 기초법학(이론법학) 부분의 경우 강목(綱目) 단위로 따져 보았을 때, 다른 법률학 분야인 국제법과 국내법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간략하게 전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률학 전문서적에 소개된 기초법학(이론법학, 이하 기초법학) 분야의 내용에 비해서도 너무 간략하게 전개되어 있어서, 국내 도서관들의 기초법학 분야 문헌분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법학 분야 자료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장한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몇몇 학술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법률학문헌소장 대비 기초법학문헌소장 비율'을 조사한 결과 <표 1>, KDC 등 십진분류표에서 기초법학 부문은 계위(階位)가 요목(산술적으로 보면 전체 법률학부문 중 10%에 해당)에 해당되는데 반해 실제 해당 문헌 수는, 서울대도서관의 경우 17%,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18%,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14%, 국회도서관의 경우 47% 등 10%를 훨씬 상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진 문헌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표 1> 국내 유명 도서관들의 법률학문헌소장 대비 기초법학문헌소장 비율

조사대상도서관	법률학 문헌 수량(A)	기초법학(이론법학) 문헌 수량(B)	B/A×100 (비율 : %)	비고
서울대도서관	63,300	11,000	17%	
성균관대학교	48,000	8,800	18%	
국립중앙도서관	153,000	21,000	14%	전국 공공도서관 전체 소장 문헌 대상
국회도서관	79,200	37,200	47%	외국 법률문헌 포함

또한 오늘날은 과거처럼 포괄적인 내용의 도서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논문 및 학술저널의 아티클 등 세부주제를 다루는 자료들도 분류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문헌분류표는 과거보다 더욱 세밀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KDC 5판의 기초법학부문(360.1~360.9)을 대상으로 오늘날의 국내 도서관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KDC 개정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법학 분야에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초법학 분야의 학문체계를 면밀히 고찰한 다음 이를 'KDC 5판 기초법학부문 개선안' 전개의 기초로 삼았으며 현행 문헌분류표인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_듀이십진분류법, 이하 DDC), NDC(Nippon Decimal Classification_일본십진분류법, 이하 NDC) 및 KDC의 기초법학부문을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에 반영시켰을 뿐 아니라 국내 유명 법학전문대학교과목을 조사하여 이 또한 개선안에 반영시켰다.¹⁾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국내 KDC 개선방안을 연구한 국내의 선행연구 가운데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학분야 중 특히 기초법학 분야에 국한된 연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법률학분야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있어 왔음이 확인하였지만 대부분 기존의 문헌분류표(대부분 Moys 법률분류표와 LC K 대상)를 해설한다든가 비교·분석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 기초법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문헌분류표 적용 방안

이 장에서는 KDC 5판의 기초법학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률학 관련 전문서적을 통해 기초법학의 세부체계와 문헌분류표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기초법학을 거론하기에 앞서 법 전반에 대해서 개관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인간의 사회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실정법을 의미하지만 법학은 '법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에 관한 체계적 인식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²⁾으로서 법학의 임무는 법규범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회현상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학은 법질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 기초법학(이론법학 : 법철학, 법사학, 비교법학, 법사회학, 법정책학 등)과 실천법학(실정법 : 국제법, 국내법)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계통'이라고 할 때에는 기초법학 및 국제법 분야를 제외하고 단지 국내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미법계통, 대륙법계통, 사회주의법계통, 종교법계통으로 대별되나 오늘날은 사실상 영미법계통, 대륙법계통으로 양분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상에서 법 전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 연구의 과제인 기초법학에 대하여 세부 영역 별로 자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기초법학은 실정법(국제법, 국내법 등) 마련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 학문영역으로 이것에

1) 혹자는 문헌분류표의 경우 전적으로 학문분류체계에만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문헌분류표는 도서관 현장의 장서를 유용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어야 하므로 교과목 명칭에 관련된 문헌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므로 교과목 명칭을 분류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통론(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58.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속하는 것으로서는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법인류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의학³⁾, 법학연구방법론(법인식론), 법정책학(입법학), 법비평, 법심리학, 범죄학(형사정책학), 법의분류⁴⁾ 등이 있다.⁵⁾ 그러나 비단 기초법학이더라도 특정 실정법인 국내법에만 관련된 기초법학인 범죄학(형사정책학)은 해당 주제 쪽에서 다루어져야 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가. 法哲學

법철학은 법의 본질과 이념을 규명하는 법률학의 기본적인 학문분야로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법이론」이라고 하여 주로 마스·레닌주의 법사상을 다루고 있으며,⁶⁾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의 일부분이다.⁷⁾

법철학에는 법리학(법률철학)을 비롯하여 법의 본질, 법의 의무, 법의 정신, 세계법론, 법가치론, 법실증주의, 법과 종교, 법과 도덕, 법과 규범, 법과 국가, 법과 사회, 법과 정치, 법과 인간, 법과 정의 등 주로 법의 본질적인 면들을 연구하는 분야들이다.⁸⁾

나. 法史學

법사학이란 한 국가 또는 민족의 법질서와 법사상이 어떻게 생성·발전·소멸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사실적으로 분석·파악함으로써 현재의 법질서와 법사상을 입체적·동적으로 이해하여 나아가서 미래적인 전망까지 가늠해 보는 기초법학의 필수적인 분야이다.⁹⁾ 법사학분야는 법학사(법학설사), 법사상사, 법제사 등으로 구분된다. 분류표를 편찬할 경우에는 분야별(법률학영역 전체), 시대별 및 지역별(국가별 포함)로도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관련문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학사(법학설사)는 법률학이라는 학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성·발전·변화해 왔는가를 검토·정리하는 것이며,¹⁰⁾ 법사상사는 법사상적 테마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실(역사)과 밀착하여 연

3) '법의학'은 대부분의 문헌분류표에서 '의학' 쪽에 나와 있지만 연구자는 '법학' 쪽에서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포함시켰다.

4) '법의 분류'는 다음 출처의 문헌에 소개된 내용으로 문헌분류표 전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출처 → 이규하, 법학개론(서울 : 형설출판사, 1991), pp.62-68].

5) '법의 분류'를 제외한 기초법학분야는 다음 문헌들에 근거하였다. [출처 → 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통론(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56-60. ② 강경학, 법학통론(서울 : 법문사, 1996), pp.151-185].

6) 최종고, 북한법(서울 : 박영사, 1993), p.479.

7) 이기형, 법철학(서울 :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0), p.13.

8) 서울대학교도서관에서 편찬한 「법률문헌색인」과 이기형의 「법철학」에 전개되어 있는 항목들이 비교적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이를 채택한 것이다.

9)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서울 : 박영사, 1983), p.31.

구하는 법률학분야이다.¹¹⁾ 동양에서는 도덕과 종교가 사회규범의 주류를 이루었고 법은 단지 그것들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동양의 法史 대부분을 한데 묶어 법사상사에 포함시키며 법사상사에는 이것 외에도 서양의 법사상사와 막스·레닌주의 법사상도 포함된다. 법제사는 법학적, 역사학적 혹은 언어학적 방법을 합목적적으로 이용하여 法源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법률학영역이다. 이와 같이 법제사는 원시사회 이래로 중세까지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정법들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Moys법률분류법에 비교적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전개되어 있어서¹²⁾ 문헌분류표 전개 시에는 이를 법제사 항목에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며 큰 항목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원시법, 古代近東法, Hellenistic법, 로마법, Byzantine법,
 기타 고대유럽법(게르만법 등), 중세 및 나폴레옹 이전의 유럽법,
 Roman-Dutch법, 동양법, 기타 고대법

다. 法社會學

법사회학(법인류학)이란 '법현상을 사회학적 방법에 의하여 역사적인 사회현상의 하나로 파악하여 인접사회과학(종교, 도덕, 정치, 경제 등)내지 인접사회형태(가족, 사회, 국가 등)와의 관련 속에서 그 성립·변화·발전·소멸을 캐내려고 하는 경험과학'¹³⁾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법사회학을 정의한다면 '법사회학이란 법의 존재방식이나 법의 실제적용방법을 사회 또는 사회적 제요인과 관련시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¹⁴⁾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사회학은 19세기 이전의 법해석학이 성문법 만능주의를 신봉한 나머지 개념법학으로 전락한 데 대한 반발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현행 불문법의 해석을 과제로 삼는 자유법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세부항목으로는 법과 여론, 법과 공공정책 등이 있다.

라. 比較法學

비교법학은 2개 이상의 사회·국가의 법질서에 있어서의 제도 또는 기능을 비교·고찰하는 독립된 과학으로서¹⁵⁾ 주된 연구 분야는 법계통별 비교, 국제법, 그리고 국제법적 성격이 강한 국제사법,

10) 최중고, 법학사(서울 : 박영사, 1983), p.14.

11) 상계서.

12) Elizabeth M. Moys, *Moys Classification Scheme for Law Books*, 2nd ed.(London : Butterworths, 1982), pp.59-63.

13) 최대권, 법사회학(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p.10.

14) 六本佳平, 法社會學入門(東京 : 有斐閣, 1991), p.2.

15) 현승중, 비교법입문(서울 : 박영사, 1974),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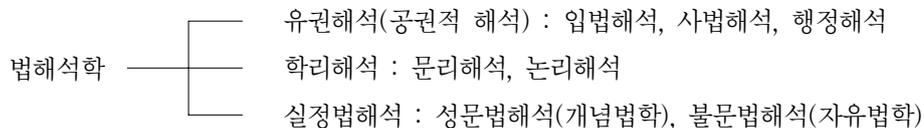
노동법, 경제법 및 환경법분야들이다.

다시 말하면 비교법학은 법계통별, 국가별, 법분류별, 시대별, 주제별 등 비교·대조가 가능한 모든 법 분야 중에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법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해석하는 기초법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분류』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라도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와 같이 상호 대비되는 2개의 법을 대조하는 내용의 문헌은 비교법학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또한 비교·연구 뿐 아니라 2개 또는 그 이상의 법계통이나 지역의 법들을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헌들도 비교법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¹⁶⁾

마. 法解釋學

法制史가 실정법의 法源(직접적 사료, 간접적 사료)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법률학분야인데 반하여 법해석학은 현행 실정법의 法源을 해석하여 그것의 적용여부를 과제로 삼는 법이론 분야로서 그 해석대상이 성문법이면 개념법학이라 하고 불문법이면 자유법학이라고 한다. 이것은 해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¹⁷⁾

〈표 2〉 법해석학의 細구분



바. 法醫學

지금까지 논급된 기초법학분야들의 경우 이론법학일반(범죄학¹⁸⁾ 제외)에 속한다는 사실에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지만 법의학만은 어디에 포함시켜야 타당할런 지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하는 기초법학분야이다.

법의학은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재판의학 또는 감정의학이라고도 한다.¹⁹⁾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등 위법여부를 따지는 경우나

16) W. A. Steiner, "Some Problems of Classification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Vol.10, No.6(December 1982), p.325.

17) 법학사전편찬회, 신법률학사전(서울 : 법문출판사, 1992), pp.15-19.
이규하, 법학개론(서울 : 형성출판사, 1991), p.48.

18) '이론법학일반'이란 모든 실정법(국제법 및 국내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법학을 의미하므로 재판법 등 특정 실정법에만 적용되는 이론법학분야인 범죄학은 제외시켜서 해당 실정법 쪽에서 취급한다.

19) 우상덕, 법의학(서울 : 최신의학사, 1982), p.1.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의료법²⁰⁾ 과는 사뭇 달라서 전문직의사가 행위주체가 되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수단으로 하여 법률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의학 교재를 보아도 법률학과 의학 양측 학문분야의 주된 교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법의학은 형사 뿐 아니라 민사상의 절차법에도 적용되는 기초법학으로서 반드시 재판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법'²¹⁾ 하에서 '재판법 일반' 항목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법률학 및 의학전문분류표에서는 양측 모두 법의학을 분류항목으로 설정해야 하겠으나 일반분류표라면 목적이 되는 법학부문(재판법)에 먼저 설정한 다음 필요할 경우 의학부문 쪽에서도 분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양자택일)의 수단을 강구하면 유용할 것이다.

사. 법의 분류

'법의분류'는 법계론이나 법체계와는 무관한 개념으로서 새로운 문헌분류법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소재가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오늘날의 법학계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사항을 토대로 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개념의 법일지라도 분류원리에 따라서는 다른 범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의 효력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류되지만 법의 존재형식을 분류원리로 삼으면 성문법과 불문법이 된다. 즉 국내법도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성문법도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개될 법률학 문헌분류표는 대체로 법률학의 주제에 따라 전개되므로 다음에 열거되는 여러 가지 관점의 법의 분류항목들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각의 법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문헌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초법학분야에 속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법률학분야에서는 통설화되어 있는 '법의 분류' 항목을 분류표 내에 채택하고자 한다. 이 항목에 분류하고자 하는 문헌들은 그 내용이 '성문법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다음에 열거된 '법의 분류' 항목에 속하는 해당 법의 이론문헌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연구'와 같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법분류 항목을 비교·연구한 문헌은 비교법학 쪽에서 분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법의 분류' 항목은 성격상 이론과 관련된 항목이므로 편의상 기초법학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아래 열거된 '법의 분류' 세부 항목들은 법률학문헌²²⁾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하였다.

(1) 대륙법, 영미법, 사회주의국가법, 종교적 이념중심국가법 : 법계통 또는 법문화권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영미법 가운데 私法의 주류인 보통법(common law)에 보통법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생된 법을 형평법(equity)이라 한다. 사회주의국가법이란 과거 대

20) 사회법의 범주에 속하는 보건위생법의 한 분야이다.

21) 재판법은 일반적으로 절차법 또는 소송법이라 일컬어지는데 대체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나누어지며 이것들을 포함하여 법원의 조직·행정 등을 포함한다.

22) 이규하, 법학개론(서울 : 형설출판사, 1991), pp.62-68.

륙법 또는 영미법에 속하던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지향적인 독특한 법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 이념중심 국가들이란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의 종교가 해당 국가의 법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2) 자연법과 실정법 : 실정법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법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법은 이것을 말한다. 자연법은 이러한 실정법의 도덕적·지도적 이념의 기준이 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의 법을 일컫는다.

(3) 성문법과 불문법 : 法源 또는 법의 淵源 즉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른 분류로서 성문법이란 제정법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절차와 제정기관에 의하여 입법되어 반드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공포되어야 하는 법이다. 불문법이란 제정·공포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서 관습법, 판례, 조리 등이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의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를 지향한다.

(4) 국내법과 국제법 : 국내법은 한 국가에 의해서 인정되어 그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을 말하며 국제법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주로 국가와 국가와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조약과 국제관습이 주요한 法源이 된다.

(5) 공법과 사법 :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고 사회생활을 다스리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포함되며,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법과 사법의 중간형태 즉 공법과 사법의 성질을 함께 갖는 사회법을 따로 구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6) 실체법과 절차법 : 법의 규정내용을 기준으로 한 구분으로서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실체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며, 절차법은 실체법의 내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법으로서 각 종 소송법이 이에 해당된다.

(7) 일반법과 특별법 : 법의 효력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분으로서 사람, 장소, 사항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원칙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특정한 사람, 장소,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하나 이 구별은 상대적이다. 따라서 민법은 상법에 대해 일반법이고, 그 반대로 상법은 민법에 대해 특별법이 되며, 보험업법은 상법에 대해 특별법이고, 상법은 보험업법에 대해 일반법 즉 보통법이 된다.

(8) 고유법과 계수법 : 법이 성립되는 소재를 구분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유법은 그 나라 고유의 소재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母法이라고도 하며, 계수법은 子法이라고도 한다. 독일법은 로마법을 계수하였으므로 이때 로마법은 고유법이 되며, 독일법은 계수법이 된다.

(9) 강행법과 임의법 : 법규의 적용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냐를 기준으로 한 법구분으로 강행법은 형법 등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이며 임의법은 민법 등 당사자가 다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10) 행위법과 조직법 : 인간의 행위자체를 규율하는 법을 행위법이라고 하고, 그 행위의 수단과

기반이 되는 조직과 제도를 규율하는 법을 조직법이라 한다.

(11) 시민법과 사회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정적 역할을 통해 사회권(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 사회법(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등)이며, 기타 다른 모든 법인 시민법²³⁾에 우선하는 오늘날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법이다.

(12) 원칙법(기본법)과 예외법(부속법) : 원칙법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예외법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칙법을 배척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법조문 가운데 ‘단서’, ‘다만’이라고 표현된 것은 거의 모두가 예외법이다.

아. 기타 기초법학 분야

(1) 법학연구방법론(법인식론) : ‘법학연구방법’의 내용을 보면, 먼저 법률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의 논리적 구성에 익숙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문장 작성이 가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문, 학술논문을 비롯한 문헌수집에 익숙해야 한다.

(2) 법정책학(입법학) : 입법현상을 좁은 뜻의 법학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널리 정치학·사회학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입법학의 목적은 실정법(實定法)의 제정(制定)·개정(改定) 및 폐지에 기여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3) 법비평 : 법비평은 주로 사회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국가법을 비평한 것이다.

(4) 법심리학 : 법심리학은 심리학을 범죄교정시스템에 응용한 기초법학으로 심리학적 원리를 아동보호, 배심원 선정, 목격자 증언, 소송 능력 등과 같은 사법적 문제에 적용하게 된다.

Ⅲ. 현행 문헌분류표 상 기초법학 부문의 전개 내역 및 분석평가

이장에서는 법률학분야 문헌분류표 전개에 참고하기 위하여 앞서 논의된 기초법학(이론법학 일반) 분야가 현행 주요 문헌분류표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상황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각 각의 문헌분류표에 전개되어 있는 내용을 표형식으로 대비해 보면 <표 3>와 같다. <표 3>에 나타난 문헌분류표들은 영미법계통 국가인 미국의 대표적인 분류표이자 국내의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학술정보센터에서 널리 통용되는 DDC, 대륙법계통국가인 일본의 표준분류표인 NDC 그리고 수정 대상 분류표인 KDC를 대상으로 삼았는데,²⁴⁾ 각기 특성을 가진 분류표들의 전개항목을 망라하는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3) 과거 대륙법의 근원이 되는 私法을 시민법이라 한다.

24) 기초법학 및 국제법 부문은 분류표에 따라 전개가 달라질 이유가 없는 법률학분야이고 국내법부문은 대륙법 또는 영미법 등 어느 법계통국가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전개가 상당 부분 달라진다.

〈표 3〉 현행 문헌분류표상의 기초법학 부문 전개 내역

DDC		NDC		KDC	
340.1	법철학 이론 : 기원, 법원, 본질, 한계, 정의, 법과 도덕, 자연법, 법과 사회	321.1	법철학	360.1	법률이론 (법철학 포함)
340.2	비교 법학	321.9	비교법학	360.199	비교법학
340.3	법개정 (법개혁)			360.3	법개정 (법개혁)
340.5	법체계: 관습법, 고대법, 로마법(비잔틴법 포함), 중세유럽법, 로만_Dutch법, 형평법, 동양법	321.2	법학사, 법사상사	360.109	법학사, 법사상사
				360.5	법률제도 (고대법, 로마법 등)
		322	법제사 (법사학 포함)	360.9	법제사
		321.3	법사회학	360.13	법사회학
		321.4	법심리학	360.18	법심리학
340.9	저축법 (섭외사법; 국제사법)				

이상의 〈표 3〉를 바탕으로 각 분류표들의 전개 내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DDC : 법사회학, 법해석이 나와 있지 않아 단점으로 지적되며, 저축법(섭외사법 : 국제사법)은 국제법, 국내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법(간접법, 학설법)이라는 주장에 의해 ‘기초법학’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혹자는 국제사법 또는 섭외사법은 국내법의 일부이며,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국제사법과 구별하기 위해 국제법을 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²⁵⁾ 이와 같이 저축법(섭외사법 : 國際私法)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국내법으로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법들은 국내법 쪽에 두고 저축법으로 취급될 때만 국제법 쪽에서 다루어야 하므로 저축법 항목은 국제법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NDC : 기초법학의 전개내용이 KDC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KDC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NDC, KDC 공히 대륙법계통의 국가법(일본, 한국)에 기반 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제사에 비중을 두어 별도의 요목(322)을 배정하여 국가별로 세분한 것이 이채롭다. 다만 법제사(법사학 포함)의 경우 국별 구분만 제시하고 있어 원시법, 고대 서양법, 게르만법, 비잔틴법 등 현재의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과거의 법체계를 분류할 수 없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③ KDC : 법률학은 십진분류표에서 대체로 강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KDC는 법제사를 법사학에서 분리시켜 동일 계위의 독립된 항목으로 취급하여 기초법학의 맨 마지막에 배정하고 있는데 NDC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초법학의 중요한 학문영역인 법해석학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불합리해 보인다. 또한 영미법, 대륙법 등 법계통 분야가 ‘각 국법 및 예규

25) 장경학, 법학통론(서울 : 법문사, 1996), p.63.

(369)' 쪽에 나와 있어 불합리한데 '영미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이론문헌에 해당되므로 기초법학 중 '법의 분류'에 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표 3>에 제시된 3개 문헌분류표(DDC, NDC, KDC)의 전개 내역 전체를 수용하는 '통합전개내역'의 골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법률개혁(법개정)
- * 법철학 : 법원, 법의 기원, 법의 본질, 법의 한계, 법과 정의, 법과 도덕, 자연법
- * 법사학(법학사, 법제사, 법사상사, 종교법 포함) : 관습법, 고대법, 로마법(비잔틴법 포함), 중세 유럽법, 시민법(로만__Dutch법 포함), 형평법, 동양법, 이슬람법
- * 법사회학
- * 법심리학
- * 비교법학

IV. KDC 5관 360.1-.9(기초법학 및 법률학일반)의 개선된 전개 내역

앞 장(Ⅲ)에서 대표적인 분류표들의 기초법학(이론법학 일반)부문의 전개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Ⅱ장 B절에서 소개된 학술문헌에 근거한 기초법학의 세부 내용들보다 간략하게 전개되어 있어서 보다 상세한 새로운 전개(KDC 5관에 대한 개선책)를 필요로 한다.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 기초법학(이론법학) 분야 문헌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대학도서관(학술정보센터)들의 340(340.1-340.9 : DDC 법률학일반 및 기초법학) 요목에 분류된 문헌의 분량이 다른 법률학분야(342-349 : 국제법 및 국내법)의 요목에 비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봐서도 분류표의 법률학일반 및 기초법학(이론법학) 부문을 보다 상세하게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선안의 전개원칙은 기존의 법률학 분야 학술서적에 소개된 내용들(Ⅱ장 B절)을 전부 수용하고 현행 주요 분류표에 전개된 내용들(Ⅲ장)을 통한 '통합전개내역'의 내용도 전부 포함하여 상세하게 전개하되, 국내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들도 반영하여 완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률학일반(법학통론, 법학개론 등 법률학 전체를 다룬 문헌)과 기초법학분야에 속하는 '법학연구방법론'은 '표준구분표(조기표)' 기호를 반영하여 배정하였고, 그 다음 기초법학에 속하면서 비교적 간단한 이론분야인 법률개혁(법개정),²⁶⁾ 법비평, 법정책학은 '이론법학일반'이라는 표목을 정하고서 그 아래 포함시켰으며 이어서 기초법학의 대표격인 법철학을 비롯하여 법사학, 해석법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법의 분류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종교법은 법계통(대륙법, 영미법 등)에

26) 이론문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DDC, KDC에 분목(分目)으로 나와 있어서 포함시켰다.

포함시켜 '법의 분류' 하에, 법의학은 의학 쪽과 소송법(국내실정법) 하에 설정하여 양자택일토록 조치하였으며, DDC의 저축법(섭외사법 : 涉外私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법 쪽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으므로 기초법학에서는 제외시켰다. 참고로 DDC와 KDC는 기초법학에 별도의 要目 수준의 독립항목을 배정하지 않고 총괄부분(DDC : 340.1-.9, KDC : 360.1-.9)에 기초법학을 포함시킨데 반해 NDC는 맨 앞 要目(그것도 2개 321 및 322)을 배정하였는데 법률학 내의 다른 주제를 위해 법률학 전체 기호에서 要目を 하나라도 더 확보한 DDC와 KDC의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기초법학 분야의 학문체계는 일차적으로 학술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시해야 하겠지만 그것에 바탕을 둔 학술기관의 교과과정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헌분류는 문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법률학분야 문헌은 전공 교과목명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중 수도권의 유수대학들과 지방의 거점대학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관련 교과목을 조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법과사회과학, 한국전통법사, 법철학, 서양법문화사, 한국의 법률가, 법사회학,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법여성학, 법인류학, 법정책학, 법학방법론, 한국근현대법사, 현대법이론, 로마법, 법경제학, 법사상사,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현대정의론과법, Law & Society, 통일법,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법과 커뮤니케이션, 법학교전강독, 한국법제사특강, 비교절차법

〈연세대〉 : 법률정보조사와 법률문장론, 법사상사, 법철학, 서양법제사, Sociology of Law, Korean Law and Legal System, American Law and Legal System, 현대사회사상과 법, 응용법철학, 한국법제사, Law and Economics, Law and Culture, Law and Politics

〈이화여대〉 : 법학방법론, 법제사, 법사회학, 로마법, 법철학, 법사상사

〈서강대〉 :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법철학, 법제사, 법사상사, 법과사회

〈성균관대〉 : 법이론, 현대법철학, 법사상사, 법경제학, 법과사회,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한양대〉 :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법여성학, 현대법철학, 법직논증이론

〈중앙대〉 : 법철학, 법학방법론, 통일법

〈부산대〉 : 법의 역사, 여성주의법, 법경제학, 법사회학, 법사상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경북대〉 :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한국근대법사, 법논증학, 법철학, 법경제학, 법인류학, 법사상사, 법사회학, 법과정의, 법문화론

〈전북대〉 : 법사상사, 법철학, 현대법이론,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충남대〉 :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법사상론, 로마법

위에 제시된 교과목 중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은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교과과정에 공통

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학술서적과 문헌분류표에 기초한 '기초법학 전개내역'의 표목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들이며, 서울대의 '한국전통법사', '한국법제사특강', 연세대의 '한국법제사', '서양법제사' 'Korean Law and Legal System', 'American Law and Legal System', 경북대의 '한국근대법사' 과목명을 비롯한 나머지 몇몇 교과목명은 학술서적과 문헌분류표에 기초한 전개에는 분류 항목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 설정된 분류 항목에 포함되므로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학술서적과 문헌분류표에 기초한 '기초법학 전개내역'의 표목에 나타나지 아니한 교과목 명칭을 추가로 포함시키되, 교과목 명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분류 가능한 법률명으로 변환하여 추가하였으며, 새로이 수용된 교과목 명칭 단위의 표목은 밑줄을 쳐서 기존 항목과 구별하였다.²⁷⁾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KDC 5판의 기초법학부문(법률학일반 포함)의 개선된 전개 내역은 <표 4>과 같다.

<표 4> KDC 5판 '340.1-.9(기초법학부문_법률학일반 포함)'의 개선된 전개 내역

360	법률학 주제법은 해당 주제 쪽에서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주제기호에 표준구분기호(-023)를 부가한다. 예 : 교통법(326.3023) ²⁸⁾ '한국 국내법일반은 여기서 분류한다. 예: 대한민국법전(360) ²⁹⁾
360.01	법학통론, 법학개론, 법학의 이해
360.02	<u>법률정보조사</u> , <u>법문서작성</u>
360.03	<u>법학교전강독</u>
360.07	법학연구방법론
360.1	기타 이론법학(Other jurisprudence) ³⁰⁾ <u>법이론</u> , <u>현대법이론</u> , <u>법적논증이론(법논증학)</u> 을 포함한다.

27) 조사대상대학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등이다.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등은 인터넷상에 교과과정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외시켰으나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용일자 : 2012. 4. 15]

28) 법률학자료 중 법률학(360)에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주제 쪽에 분류할 것인가 하는 임의규정(optional provision)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 분류담당자는 법률학(360) 쪽에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주제(001-999) 쪽에 분류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겠는데 법률전문가(법학자, 법률학도 포함)가 더 많이 찾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예 : 법철학, 형사정책), 즉 법률전문서적이라면 법률학(360) 쪽에 분류해야 할 것이고, 일반이용자가 더 많이 찾을 것으로 판단되면(예 : 도서관법) 해당 주제 쪽에 분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분류담당자의 판단에 의하지만 신중하게 분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일반이용자를 위해서 해당 주제 쪽에 분류하게 될 경우 '해당 주제기호 +023(표준구분표 기호 : 법률)'의 조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기초법학부문 뿐만 아니라 국제법 및 국내법 부문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임의규정(양자택일)'에서 분류기호로 채택된 기호(청구기호의 일부가 되어 서가 상 위치 결정 기호)가 아닌 기호는 반드시 목록상에서 '분류부출' 장치를 마련하여 탐색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9) KDC 국내법부문은 이 논문의 연구범위에 들지 않지만 KDC의 법학부문(360)의 전체 전개체계를 고려할 때 국내법일반 문헌(예 : 대한민국법령집)이 360(綱目 항목)에서 취급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취급하였다.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 360.11 법률개혁(Law reform), 법개정
- 360.12 법정정책학(입법학) Legislation
여기에서는 광의의 개념인 국가권능을 의미하고 국내법의 「헌법·국가법」에 속하는 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의미한다.
- 360.13 법비평(Legal criticism)
- 360.2 법철학(Philosophy of law)
자연법(법규범학 포함)은 '법의 분류'하에서 분류한다.
- 360.21 법리학(법률철학) Legal principles
- 360.22 법의 본질(The Essence of law), 법의 의무(The Duty of law)
법의 정신(The Spirit of law), 법의 기원, 法源, 법의 한계³¹⁾
- 360.23 법가치론(Legal valuation)
- 360.24 법세계론(세계통일법론) International uniform law
'통일법'을 포함한다.
- 360.25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 360.26 법과 종교(Law and religion)
법과 도덕(Law and morality), 법과 규범(Law and critrion)을 포함한다.
- 360.27 법과 국가(Law and state)
법과 사회(Law and society), 법과 정치(Law and politics)을 포함한다.
- 360.28 법과 인간(Law and mankind)
- 360.29 법과 정의(Law and justice)
'정의론과 법'을 포함한다.
- 360.3 법사학(Legal history)
「법학사, 법학설사, 법제사」를 포함한다.
여기서는 중세 이전의 법을 다룬다.
- 360.31 원시법(Primitive law)
- 360.32 관습법³²⁾
- 360.33 로마법(Roman law)
Hellenistic법(Hellenistic law), 비잔틴법(Byzantine law)을 포함한다.
- 360.34 기타 고대유럽법(게르만법 등) Other ancient European law
- 360.35 중세 및 나폴레옹 이전의 유럽법(Medieval and Pre-Napoleonic European law)
- 360.36 Roman-Dutch법(Roman-Dutch law)
- 360.37 동양법(Oriental law)
'고대 근동법(Ancient near East law)'을 포함한다.

30) 법철학 등 분目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은 항목들을 '기타 이론법학'이라는 표목의 분目 항목을 마련하여 한데 모았다.

31) '법의 기원, 法源, 법의 한계'는 DDC에만 나와 있다. <표 2> 참조.

32) 관습법은 DDC에만 나와 있다. <표 2> 참조.

- 360.38 법사상사(History of legal thoughts)
- 360.381 동양법 사상사(History of Oriental legal thoughts)
- 360.382 서양법 사상사(History of European legal thoughts)
- 360.383 막스·레닌주의법 사상사(History of Marxism legal thoughts)
- 360.4 법해석학(Interpretation of law)
 - 360.41 개념법학(성문법) Conceptional jurisprudence
 - 360.42 자유법학(불문법) Liberal jurisprudence
 - 360.43 유권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입법해석(legislative interpretation), 사법해석(Judicial interpretation), 행정해석(Administrative interpretation)을 포함한다.
 - 360.44 학리해석(Doctrinal interpretation)
문리해석(Grammatical interpretation), 논리해석(Logical interpretation)을 포함한다.
 - 360.45 법전해석(제정법의 해석) Statutory interpretation
- 360.5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 360.51 법과 여론(Law and public opinion)
'법과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
 - 360.52 법과 공공정책(Law and public policy)
 - 360.53 법과 경제³³⁾
'법경제학'을 포함한다.
 - 360.54 법여성학
 - 360.55 법과 문화
'법문화론'을 포함한다.
- 360.6 법심리학(Legal psychology)
'범죄심리학은 「형법」 하에서 분류한다.
- 360.7 비교법학(Comparative jurisprudence)
법계통별, 국가별, 법분류별, 주제별, 시대별 등에 의하여 비교·대조된 법을 분류한다.
또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법을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헌도 여기서 분류한다. 이 때 비교·대조된 두 가지의 법을 상호 조합하여 기호를 완성하되 두 기호 사이에 0을 삽입한다.
- 360.8 법의 분류(Classification of law)
여기서는 중세 이후의 법을 다룬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는 「비교법학」 하에서 분류하고 여기서는 「법의 분류」 항목에 열거되어 있는 개개 항목의 이론문헌을 분류한다.
- 360.81 법계통(Legal system)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계통들로서 로마법 등 과거 법계통은 360.3(법사학)에서 분류한다.

33) 법철학분야와 법사회학분야가 앞서 국내 학술문헌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연구자가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제인 종교, 국가, 인간, 정의 등은 법철학에, 기타 사회의 제 분야의 주제는 법사회학에 포함시켰다.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 360.811 대륙법(Civil law system)
시민법을 포함한다.
- 360.812 영미법(Common law system)
보통법, 형평법을 포함한다.
- 360.813 사회주의 국가법(Socialistic law system)
- 360.814 종교중심 국가법
종교경전 자체를 의미하는 종교법(360.35)과는 달리 종교법에 기초한 오늘날 특정 국가의 국내 실정법을 의미한다.
- 360.82 자연법(법규법학 포함) Natural law, 실정법(The Positive law)
- 360.83 성문법(Written law)_제정법, 불문법(Unwritten law)
- 360.84 공법(Public law), 사법(Private law)
- 360.85 실체법(Substantive law), 절차법(Objective law)
원칙법(기본법), 예외법(부속법)을 포함한다.
- 360.86 고유법(Native law), 계수법(Adopted law)
- 360.87 강행법(Imperative law), 임의법(Dispositive law)
일반법, 특별법을 포함한다.
- 360.88 조직법(Organizing law), 행위법(Actual law)
- 360.89 시민법(Civil law),³⁴⁾ 사회법(Social law)

(법례 : 밑줄 친 표목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명칭에 기초하여 추가한 것임)

V. 결 론

KDC 5판 기초법학 부문이 너무 간략하게 전개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여 먼저 법학 분야 학술서에 바탕한 기초법학(이론법학) 분야의 세부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다음, KDC, DDC, NDC의 기초법학 부문을 비교·분석하여 일부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설 전공교과목을 조사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보충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전개를 도출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분류기준에 의해 표현되는 법의 여러 종류를 구분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법의 분류'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분류표에서 기초법학 외의 법 부문(국제법 및 국내법)에 포함시

34) 현대법 중 사회법이 아닌 시민법을 의미하며 대륙법의 근간인 전통적인 시민법의 개념과는 다르다.

키기 곤란한 법 명칭들을 한데 모았으며,

2.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설 전공교과목명칭을 조사한 결과, 14개의 새로운 항목(일부는 주기에 포함)이 추가되어 법학전문대학원도서관 소장문헌 분류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3. 마지막으로 주제법 분류 시 주제 쪽과 법학 쪽 가운데 선택하는데 있어서 개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제법 및 국내법과 더 밀접한 사안이지만 문헌분류표에서의 위치(360 : 요목), 즉 360(법학) 공통사항을 360(요목) 쪽에 주기하게 되므로 기초법학 쪽에서 취급하였다.

이상에서 KDC 5판 기초법학(이론법학) 부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법학(360) 부문 가운데 나머지 부문, 즉 국제법과 국내법 부문의 개선방안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국내법의 경우 국가별로 법체계가 달라서 대륙법계통의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른 KDC로서는 미국 등 영미법체계를 따르는 국가의 국내법 문헌 분류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법학사전편찬회. 신법률학사전. 서울 : 법문출판사, 199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통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이상덕. 법의학. 서울 : 최신의학사, 1982.
 六本佳平. 法社會學入門. 東京 : 有斐閣, 1991.
 이규하. 법학개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1.
 이기형. 법철학. 서울 : 승실대학교 출판부, 1990.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表. 新訂9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2005.
 장경학. 법학통론. 서울 : 법문사, 1996.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서울 : 박영사, 1983.
 최종고. 법학사. 서울 : 박영사, 1983.
 최종고. 북한법. 서울 : 박영사, 1993.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서울 : 박영사, 198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표. 제5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현승중. 비교법입문. 서울 : 박영사, 1974.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Ohio :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1.

Doyle, Sheila M. "Religious Law." In : *Manual of Law Librarianship*, edited by Elizabeth M. Moys. 1976. pp.362-378.

Moys, Elizabeth M. *Moys Classification Scheme for Law Books*. 2nd ed. London : Butterworths, 1982.

Steiner, W.A. "Some Problems of Classification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Vol.10, No.6(December 1982). pp.325-342.